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100
----------	------

2025년 9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실천과 건강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지원,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지원
-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 알레르기질환 정책개발 지원
- 기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바. 소요예산 : 390백만원

- 민간위탁금 : 39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김혜진 (☎ 2133-7884)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제출 경위

- 동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기존 제9차 위탁 (재계약)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과의 민간위탁 협약기간(3년) 만료 시기가 '25년 12월 말로 도래 예정임에 따라,

※ 9차 협약 (재계약): '23. 1. 1. ~ '25. 12. 31. (3년)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 이번 '25. 8월경 제332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재위탁) 및 제4조의3제1항(의회동의 및 보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으로 제출되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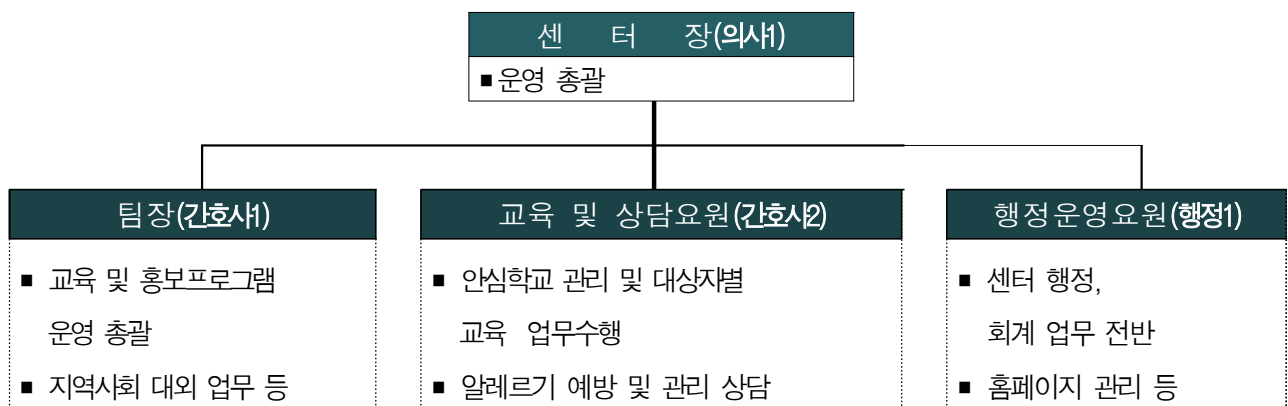
2 민간위탁 개요

○ 기존 민간위탁 추진 현황

구 분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1차	2008.5.2~2008.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보건복지부 ‘천식아토피 교육정보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의거 지정 위탁 (보건복지부-108, ‘08.03.11)
2차	2009.1.1~2009.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3차	2010.1.1~2010.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4차	2011.1.1~2011.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5차	2012.1.1~2013.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공개모집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6차	2014.2.7~2016.12.31.	서울의료원	재위탁(공모)
7차	2017.1.1~2019.12.31.	서울의료원	재계약
8차	2020.1.1~2022.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재위탁(공모)
9차	2023.1.1.~2025.12.31.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재계약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위탁유형 : 사무형
- 구 분 : 재위탁 (공모)
- 위탁기간 (예정) : 3년 ('26.1.1. ~ '28.12.31.)
- 근무인원 : 5명 (센터장(1), 팀장(1), 직원(3))



- 소요예산 ('25년 기준) : 390,000천원

연 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5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390,000 천원 - 민간위탁금 (국·시비 5:5 매칭) = 390,000천원 ▶ 인건비 = 192,500천원 ▶ 사업비 = 167,500천원 ▶ 운영비 = 30,000천원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부서명	위탁사무명	유 형	수탁기관	위탁 기간	심의 결과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무형 (재위탁)	공모 예정	3년 이내 (’26.1.1.~’28.12.31.)	적정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 84.51점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필요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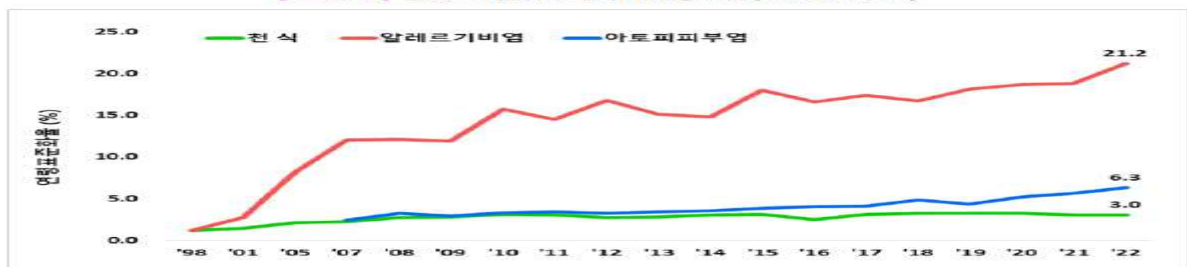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시장’이 재위탁 (공모)하고자 하는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구체적인 사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체적인 위탁사무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지원
-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 알레르기질환 정책개발 지원
- 기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 동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주요 사무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관련 ‘교육, 홍보, 상담, 정책 개발’ 등이며, 이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한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 이에 더해,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성장에 따른 ‘생활 환경의 변화’,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 등의 증가’, ‘생활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점점 다양한 종류의 알레르겐(알레르기 원인물질)에 노출 되고 있음. 그리고 이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 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그림 1 】 알레르기질환 의사진단경험률(1998~2022)



※ 자료원 :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 따라서, 동 센터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알레르기 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 13조제2항제2호 가목 ‘주민의 복지증진’,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및 바목 中 ‘그 밖의 질병 예방’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즉, 동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사무’라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따라서, 동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및 동법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해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동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주요 사무는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 관련 ‘교육, 홍보, 상담, 정책 개발’ 등이며, 이에 따라 ‘알레르기 질환’과 관련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사무라 판단됨.
- 따라서, 동 센터를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시민들의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서울시 전체의 알레르기 질환 대응 역량을 강화 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아울러 동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제2호 가목 ‘주민의 복지증진’,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및 바목 中 ‘그 밖의 질병 예방’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 따라서, 동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 및 동법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근거해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지난 2023년 11월 14일, 동 센터는 시의회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 바, 향후 센터 운영 시 ‘실질적인 아토피 천식 교육 사업 등의 효과성과 시민 체감성’ 증진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100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알레르기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올바른 알레르기 예방 및 관리 실천과 건강향상 기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주요 위탁사무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 지원,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제공 등이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기관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지역사회 알레르기질환 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유치원, 어린이집 포함) 운영지원
- 지역사회 알레르기 질환 예방관리 교육 및 홍보자료 제작·보급
- 지역사회 상담서비스 및 네트워크 구축
- 알레르기질환 정책개발 지원
- 기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등에 관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라. 민간위탁기간 : 2026.1.1.~2028.12.31.(3년)

마.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바. 소요예산 : 390백만원

- 민간위탁금 : 39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권한의 위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서울특별시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② 시장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시 민간위탁금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김혜진 (☎ 2133-7884)